

개정 전	개정 후
<p><⑥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면 §28③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 면 율) 취득세 25%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현행 3년 연장 ○ (감 면 율) 취득세 25% 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<p><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§30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 면 율) 취득세·재산세 25%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현행 3년 연장 ○ (감 면 율) 취득세·재산세 25% 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<p><⑧ 공공매입임대§31⑥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대상자) LH, 지방주택공사 ○ (감 면 율) 취득세 25% · 재산세 50% ○ (일몰기한) 2027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감면대상자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 ○ (감면대상자) LH, 지방주택공사 및 주택 도시보증공사 ○ (감 면 율) 취득세 25% · 재산세 50% ○ (일몰기한) 2027.12.31.
<p><⑨ 신축 소형주택 §33의2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대상) 신축 소형주택* * 공동주택(아파트 제외)·도시형 생활주택·다가구 주택, '24.1.10.~'25.12.31. 준공, 60㎡이하, 원시취득 限 ○ (감 면 율) 취득세 최대 50%(법25%+조례25%)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감면 종료 ○ 부동산대책에 따른 일시적 감면으로 일몰종료 ※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('24.1.10.)
<p><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§33의3 ①~③ : 사업주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대상) 사업주체 : 2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4.1.10.~'25.12.31. 준공, 전용면적 85㎡이하, 3억원 이하, '25.12.31.까지 임대계약 체결 조건 ○ (감 면 율) 취득세 최대 50%(법25%+조례25%)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일몰 1년 연장 ○ (감면대상) 사업주체 : 2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4.1.10.~'26.12.31. 준공, 전용면적 85㎡이하, 3억원 이하, '26.12.31.까지 임대계약 체결 조건 ○ (감 면 율) 취득세 최대 50%(법25%+조례25%) ○ (일몰기한) <u>2026.12.31.</u>